

의안번호	2203414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계번호	24B337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신설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6조의2 신설(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 공공급식운영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임

[표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 (3041-385)	농축산물 할인 지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 비용 할인 지원	39,000	108,000	108,000	108,000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지역단위 푸드 플랜 구축지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 행 지원, 공공급식통합플 랫폼 운영·관리 등	—	—	7,490	7,490
	소계		39,000	108,000	115,490	115,490
농업농촌사 회적가치확 산지원 (4135-394)	지역단위 푸드 플랜 구축지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 행 지원, 공공급식통합플 랫폼 운영·관리 등	9,860	10,431	—	—
	소계		9,860	10,431	—	—
농산물직거 래활성화지 원(용자) (3039-311)	농산물직거래 구매자금지원 (농산물직거래 구매자금지원)	농산물을 직구매하여 소 비자에 판매하고자 하는 단체에 농산물 직구매 자 금에 대한 용자 지원	11,970	11,970	7,533	11,800
	농산물직거래 구매자금지원 (공공급식운영 활성화)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국 내산·지역산 우수 농축 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급 식지원센터, 공공급식 식 재료 공급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공 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 구매자금에 대한 용자 지 원	—	—	10,000	15,000
	농산물직거래 구매자금지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친 환경 농산물 취급 단체에 대한 직거래 농산물 구매 자금에 대한 용자 지원	—	—	22,800	20,520
	소계		11,970	11,970	40,333	47,320
공공급식운 영활성화지 원(용자) (3033-349)	공공급식운영 활성화지원(용 자)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국 내산·지역산 우수 농축 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급 식지원센터, 공공급식 식 재료 공급업체,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공공 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 구매자금에 대한 용자 지 원	15,000	15,000	—	—
	소계		15,000	15,000	—	—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안)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용자) (2276-305)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용자)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취급 단체에 대한 직거래 농산물 구매 자금에 대한 용자 지원	26,000	28,000	—	—
	소계		26,000	28,000	—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보조) (3039-310)	직거래장터지원	비 상시적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인 직거래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운영비, 홍보비 및 교육비 등 지원	1,168	1,350	1,350	1,470
	직거래활성화지원	직거래 홍보·교육 지원 및 농산물직거래 유통실태조사 수행 지원	1,150	700	550	420
	농산물신유통 경로확산	스마트스튜디오 운영,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온라인 직거래기반 육성, 유기농식품유통활성화 등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기반조성 지원	1,651	1,751	1,751	3,321
	농식품거래소지원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기업간 거래 지원, 온라인 경매 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2,790	2,550	2,350	800
	꾸러미사업지원	꾸러미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에 제품 상품화, 홍보, 마케팅, 물류비, 교육비 지원	200	200	200	164
	소계		6,959	6,551	6,201	6,175
	합계		108,789	179,952	162,024	168,985

주: 1.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사업(4135-394)의 내역사업인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은 2024년부터 농식품소비기반조성사업(3041-385)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2. 공공급식운영활성화지원사업(용자)(3033-349) 및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용자)(2276-305)은 2024년부터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용자)(3039-311)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포상 대상 기업 수, 포상 선정·기준, 포상금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기준 및 지원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¹⁾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 안 제16조의2(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생략)

②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의 선정방법·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